

「2026년 청년고용지원사업」 3차 접수 공고

화성시와 화성상공회의소에서는 관내 청년의 채용을 독려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『2026년 청년고용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※ 동 사업은 화성시 예산 100%로 지원됨

2026년 8월 19일

화성상공회의소 회장 안상교

1. 사업내용

■ 사업명 : 2026년 청년고용지원사업

■ 사업개요

화성시 거주 만19세 ~ 만 39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(2025. 10. 1. 이후 채용)한 화성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게 청년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

■ 지원규모 : 90명, 180건

■ 지원내용 : 청년 신규채용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

■ 지원한도 : 기업당 최대 3명 지원

■ 신청기준 :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 후, 6개월 후 단위로 신청 및 지원

정규직 채용일 기준	3개월 후	6개월 후
지급차수	1차	2차
지급액	150만원	150만원
고용유지 의무기간	3개월	6개월

※ 예시) 청년 2개월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지원대상 아님(최소 고용유지기간 미충족)

청년 5개월 근무 후 퇴사한 경우 1차 지원은 가능하나(고용유지 중 청구), 2차 지원은 불가능

※ 채용 6개월 후 최초 신청 시 지원금 전액 일괄 신청 지급 가능

※ 차수별 신청일 당시 해당 청년은 재직하고 있어야 함

(최소 단위 3개월은 근무하였으나 신청일 당시 퇴사 상태일 경우 미지급)

■ 선정방법 : 선착순으로 신청서 접수, 적격여부 심사 후 선정

■ 접수기간 : (3차) 2026. 9. 9(수)~18(금) 18:00까지(하단 3. 지원절차 및 신청 방법 참조)

2. 참여기업 및 신규 채용인력 요건

■ 참여기업 요건

- 화성시 거주 중인 19세~39세 미취업 청년을 2025. 10. 1. ~ 2026. 9. 30. 내 **정규직으로 신규 채용**한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
※ 사업자등록증 상 화성시 소재 기업 (본사가 화성시 소재 기업)

참여기업 제외 대상

- (1) 소비.향락업*, 또는 근로자 파견업체 및 공급업체(용역업체 등 포함)
* 소비.향락업
 -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'청소년유해업소'
 -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해당기업
 -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
- (2) 6개월 미만의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(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)
- (3)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공기업, 「초·중등 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(알리오시스템(www.alio.go.kr) 상 공공기관 지정 현황 참조)
- (4)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
- (5)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연체중인 기업
- (6) 채용일 기준 1개월 이전부터 참여자 채용일까지 정리하고 등 사업주의 고용 조정에 의한 감원(인위적 감원*)사실이 있는 기업
(*인위적 감원 :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 코드번호 "23"①~⑥ 또는 "26"③)
- (7) 노사분규 중인 기업,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등 참여인력의 정상 근무가 어려운 기업
- (8) 「근로기준법」제 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*
(*사업주 확인 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정보공개 >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)
- (9) 자본잠식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렵거나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
- (10) 부동산업, 임대업, 광업,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서비스업
- (11) 보건업(병의원 등)
- (12)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비영리 법인, 단체, 협동조합, (예비)사회적기업, (예비)마을기업
- (13) 다단계 판매업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(보험회사, 제약회사, 물류도매업 등)
- (14) 학원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, 숙박, 음식업
- (15) 정부 및 타지자체 등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또는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중인 기업 (예.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,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)
- (16) 2023 ~ 2025년 3회 연속 화성시 청년 고용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
- (17) 중소기업·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불가 기업

■ 근로자 요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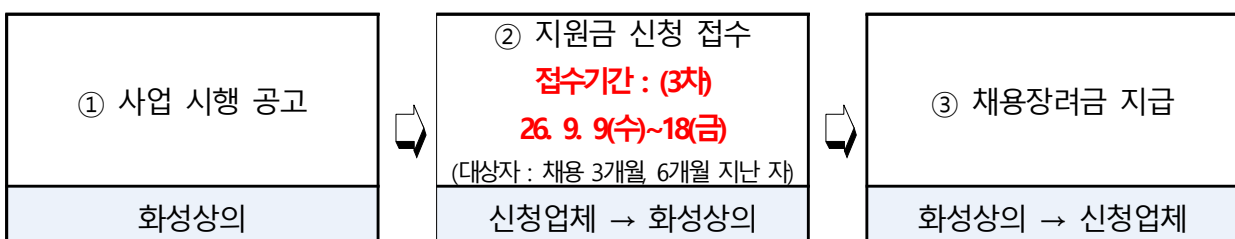
- 화성시 거주(초본 주소지 전입 기준) 만19세 이상 ~ 만39세 이하 청년
- ※ 근로자 연령 및 관내 주소 판단 여부는 **정규직 채용 직전 일자 기준**

참여 근로자 제외 대상

- (1)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청년 고용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 참여자
예)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(단, 청년(재직자)내일채움공제 가능)
- (2) 법령상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
※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,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, 「병역법」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이나 특례근무 중인 자를 말함
- (3)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. 다만,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 이민자(F-6)는 가능
※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주소, 거주기간, 만료일 등 확인), 외국인등록증(외국인 코드 확인), 결혼이민자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
- (4) 채용일 이전 1년 이내 채용 기업(또는 채용 기업과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)에서 근무한 자
- (5)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한 자
- (6)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
- (7) 채용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, (사업주 및 사업주 배우자의)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
- (8) 타 재정지원사업(R&D 사업 등)을 통해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자
- (9)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 채용인력으로 채용되었던 자
- (10) 기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
- (11) 사외이사 등재자 등 실제 경영에 관여하는 자
- (12) 25. 10. 10. 이전부터 참여기업에서 이미 근무 중인 자
- (13) 2022~2024년 간 타 기업에서 동 사업으로 고용지원금을 받고 이직하여 재신청한 자
- (14)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
(단,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제외)

3.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

■ 지원 절차



■ 신청 방법

■ 접수기간 : (3차) 2026. 9. 9(수)~18(금) 18:00까지

- ※ 사업대상여부 충족 및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지원금 신청하는 신청일 기준으로 선착순 선정하며, 기간 외 도달 서류는 불인정. 예산 한도를 초과할 경우 모집 마감함.
- ※ 1차 신청 및 지원금을 수령하였어도 2차 신청 및 지원금은 기한 내 선착순 지원
- ※ 사업물량 대비 접수 건에 따라 예산 한도 초과 시 조기 마감
(단, 미달 시 접수기간 연장하여 선착순 접수 후 마감)

■ 접수 방법 : 담당자 메일 접수(sky7942@korcham.net)

- ※ 본 사업은 **2025. 10. 1. 이후 신규 채용** 건에 한하여 지원하며,
채용 후 3개월, 6개월 되는 달의 급여지급 후 신청 가능
(예시1, 26. 3.15. 채용자의 경우 3개월 분 이상 급여가 26. 7.10. 이전에 지급된 이후 신청 가능)
(예시2, 25.11.20. 채용자의 경우 6개월 분 이상 급여가 26. 7.10. 이전에 지급된 이후 신청 가능)

■ 신청서류 : 사업공고문 내에 첨부 된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참조

※ 신청 제출 서류

- ① [서식1] 2026년 청년고용지원사업 신청서
- ② [서식2] 사업 요건 확인서 1부
- ③ [서식3] 참여기업 준수 및 유의사항 확인서 1부 (사업장용)
- ④ [서식4]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(근로자용)
-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⑥ 중소(중견)기업 해당 확인서 1부
- ⑦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
- ⑧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간 고용보험 상실자 목록 1부
- ⑨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(사업장용) 1부
- ⑩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된 신규 채용직원의 주민등록초본 1부
- ⑪ 근로계약서 사본 1부
- ⑫ 대상청년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(근로자용) 1부
- ⑬ 월별 급여명세서 1부
- ⑭ 월별 급여 이체확인증 1부
- ⑮ 법인통장사본 1부

■ 지원금 지급 : 적격여부 확인 후 참여기업 최종 선정, 26년 10월 경 지원금 지급(예정)

■ 지원 중단 및 유보 사유

■ 지원 중단 사유

- 지원기간 중 참여기업이 화성시 이외 지역 이전
- 지원기간 중 신규 채용인력이 화성시 이외 지역으로 주소지 이전
- 신규 채용인력이 타 일자리사업 등에서 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
- 지원기간 중 인위적 감원이 발생하는 경우
- ※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, 정년,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
- 지침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
- 신청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- 기타 자본잠식 등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
- 사업접수 종료일까지 월별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전부 또는 일부 신청서류를 제출 또는 보완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산재, 병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 중단

■ 지원 유보 사유

- 4대 보험료 납부금액에 연체가 발생한 경우
- 급여 체불 등 일시적 사유로 채용지원금이 적합하게 사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5. 상담 및 문의

- 화성상공회의소 공공사업팀 : 031-350-7968